

## 100-022. 鮮內검사국 정보-2

■ 1935년부터 1936년까지 光州地方法院, 大邱地方法院, 淸津地方法院, 平壤地方法院, 海州地方法院, 咸興地方法院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송부한 문서로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산당과 연계하여 지하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등 총 17건의 문건 수록

1. 1936년 3월 26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판결서 : 사건 당사자는 金正洙, 李琪同, 趙占煥, 朴興福, 姜榮秀, 梁在容은 징역 2년 6월, 金盛根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美日·蘇日間の 국제관계의 긴박성에 비추어 제2차 세계대전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켜 조국의 해방과 연결되도록 하자고 공모하고 실천에 옮기려했다는 혐의로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2. 1936년 3월 26일 大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 사건 당사자 金斗五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 1936년 11월 20일 大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서: 사건 당사자 金鍾壽는 징역 2년 李容倂, 崔弘基, 金光泰는 징역 3년, 金俊綱, 劉載煥은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水原高等農林學校(現서울大學校 農科大學) 出身으로 조선을 일본제국으로부터 이탈시켜 조선 내에 私有財産制度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고자 협의한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
4. 1936년 2월 26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판결서 : 사건 당사자 河順哲은 징역 1년, 朴景任, 金守桴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 1936년 2월 12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는 모두 珍島 사람들이며, 曹圭先, 郭在必, 朴鍾淙, 郭在述 등 全部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6. 1935년 11월 9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全長元 외 14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 사본 : 全長元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절도혐의, 全會孫은 치안유지법 위반, 金成男, 金相禹, 吳在奎, 金二女, 崔雙金女, 崔玉節 등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절도 혐의이며, 蔡丙月은 치안유지법 위반, 崔玉鎔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절도, 金相洛, 金三彬은 치안유지법 위반, 全元鳳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절도, 崔致順, 全會孫은 치안유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7. 1936년 10월 28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 전항과 같은 사건기록이다. 이들의 판결내용은, 全長元 징역7년, 全會孫 징역6년, 金相禹 징역5년, 金成男 징역 4년, 崔根柱 징역 3년 6월, 吳在奎, 全元鳳각 징역3년, 全會孫, 崔致順, 金相洛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金二女, 崔雙金女, 崔玉節, 蔡丙月, 崔玉鎔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하였다.
8. 1936년 11월 5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 사건 당사자인 鄭成彦과 金鎭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9. 1936년 10월 28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판결서 : 사건 당사자 金煥汀과 金玉岩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0. 1936년 5월 8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인 姜文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내용이다.

11. 1936년 4월 1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 (기소장) 사본 : 기소된 자는 崔龍國이다.
12. 1936년 4월 28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전항 崔龍國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崔龍國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 1935년 10월 15일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사건의 기소장 사본 : 기소된 李永秀, 鄭均範, 鄭均參, 鄭寅洙, 公昌甲 등 5명의 범죄사실이 있다.
14. 1936년 3월 11일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전항 李永秀의 4명의 판결서 사본 : 李永秀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년, 鄭均參과 公昌甲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鄭均範과 鄭寅洙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5. 1935년 1월 26일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출판법 및 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의 韓永允의 63명에 대한 예심청구서
16.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출판법 및 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의 韓永允의 63명에 대한 예심종결결정
17.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출판법 및 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의 韓永允의 63명에 대한 판결서 : 韓永允, 李在弼은 징역 7년, 崔豊烈은 징역6년, 韓泰連은 징역 5년, 韓承謙, 李甲燮, 全泰鉉 金峴模는 징역 4년, 韓秉堯, 韓泰崙은 징역 3년 6월, 金鳳淵, 李春宗, 李華林, 韓興國, 張翰源은 징역 3년, 韓泰銀, 金東華, 韓國模, 李心赫은 징역 2년 6월, 韓桂乙, 韓桂燁, 金光沫, 車南軒, 元鳳吉, 徐洪範, 金湜觀, 李道林, 李喜燮, 全成俊, 張觀淳, 韓鳳韶, 韓泰周, 韓泰鏞, 李宗善, 韓承源, 韓殷粥, 韓一相, 李在春, 韓念植, 姜信奎, 李演模, 金東燁, 高宗元, 千玉金, 鄭斗杓, 柳成薰, 申榮秀는 징역 2년, 李壽善, 金鍾烈, 金鍾漢, 全載三, 韓養濟, 韓周松, 全榮一, 韓七鋒, 韓會允, 韓肯孝, 韓泳澤, 李東祿, 元仁協, 元泰慕, 金龍濟, 金相文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全榮一, 韓七鋒, 韓會允, 韓肯孝, 元仁協, 金龍濟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선고에 대하여 韓永允, 李在弼, 李甲燮, 崔豊烈, 韓泰連, 全泰鉉, 金峴模, 張翰源, 金鳳淵, 韓秉堯 등 10명은 不服하여 控訴를 제기하였다.